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벤처기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, 투자·판로 등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벤처기업 주간 지정

- 1) 매년 12월 첫째 주를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 21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함
- 2) 벤처기업 성과 확산, 국민 인식 제고 등 행사 운영 근거 마련

나. 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

- 1) 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
- 2)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2(벤처기업 주간) ① 법 제16조의21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.

1.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
2.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, 체험 및 교육행사
3. 벤처기업의 투자유치, 판로개척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컨퍼런스
4.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세미나
5. 그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2(벤처기업 주간) ① 법</u> <u>제16조의21 제1항에 따른 벤처</u> <u>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</u> <u>로 한다.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</u> <u>은 벤처기업주간에 다음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</u> <u>를 추진할 수 있다.</u> <u>1.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</u> <u>위한 기념행사</u> <u>2.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</u> <u>제고를 위한 홍보, 체험 및 교</u> <u>육행사</u> <u>3. 벤처기업의 투자유치, 판로개</u> <u>척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</u> <u>한 컨퍼런스</u> <u>4.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</u> <u>연회 및 세미나</u> <u>5. 그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</u> <u>지에 부합하는 행사</u> <u>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</u> <u>기업 주간 행사의 효율적인 추</u> <u>진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</u> <u>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</u> <u>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</u>

	<u>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708